

case
3

자전거

요약

사례명	자전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2358 (2020.01.23.)
사실관계	중국산 카본 프레임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수입 및 조달된 부품을 대만에서 조립하여 최종 제품인 자전거 완성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프레임은 자전거에 전체적인 형태, 크기, 특성을 부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며, 바퀴, 구동계, 핸들바, 안장 등과 같은 개별 부품은 프레임에 부착되면서 개별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명칭, 성격 및 용도가 변화하므로 완성된 자전거의 원산지는 프레임의 원산지인 중국임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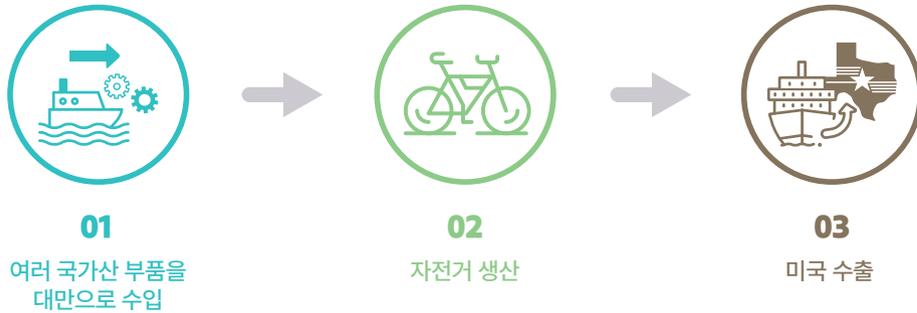
사 례 명 [자전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2358 (2020.01.23.)

사실관계

요청자	미공개 (대리인: Denise Basilio, Supervisory Import Specialist)	
제품명	• 자전거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본 프레임: 중국산 • 바퀴, 구동계, 핸들바, 스템 등 부품: 대만산 • 기타 부품: 중국, 일본, 미국산 	

제조과정



상세과정

1. 중국에서 자전거 프레임 제작 후 대만으로 수입
2. 여타 부품들은 중국, 일본 및 미국에서 수입
3. 대만에서 자전거 완성품으로 조립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

*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한 총비용에서 중국산 프레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40%임

2)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실시되는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와 성격, 실제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 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판정이 이루어짐
- National Hand Tool(1993) 사건에서 국제무역법원("CIT")은 수공구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것은 동일 공정을 통해 생산된 수입품을 서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수입업자들에게 불일치하는 표시 요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사례 플렉스 소켓(flex sockets), 스피더 핸들(speeder handles), 플렉스 핸들(flex handles) 제작용 특정 수공구 부품들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열처리, 표면 세척, 녹 및 부식 방지 처리 등 수행

판결 해당 부품들이 대부분 수입 전에 냉간성형(cold-formed) 또는 열간단조(hot-forged) 방식으로 최종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었으며, 미국으로 수입 후에 수행된 가공(강도를 높이기 위한 열처리, 표면 세척을 위한 샌드블라스트 처리, 녹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 도금 처리 등)은 수입 부품의 명칭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가공 후 물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해당 물품의 용도는 수입 시점에 이미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이와 더불어 CIT는 Energizer Battery(2016) 판례에서도 실질적 변형 기준의 의미를 상술하고 있음

관련 판례 및 분석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기준을 검토
- 수입 후 공정이 조립에 불과한 경우, 특히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성질(character)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음
- 수입 시점에서 최종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도(use)의 변화가 없다고 봄
- 조립이 단순한 수준인지 아니면 복잡하여 개별 부품이 독립된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물품의 구성요소로 전환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조립 또는 가공을 통해 물품의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물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 역시 고려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수입된 신발의 갑피가 미국 내에서 밑창과 결합하는 공정을 거칠 경우, 해당 갑피가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제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0 C.I.T. 48, 61, 628 F. Supp. 978, 991 (1986)

-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으로 미국 내에서 완제품 오렌지 주스를 생산하는 경우, 완제품 오렌지 주스의 본질적 특성은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에 있으므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

- CBP는 아래 판정 사례를 인용하면서 자전거의 본질적 특성은 프레임에 의해 부여된다고 주장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5368 (1994.06.30.)*

- 사례** 자전거 튜브와 프레임은 대만산, 바퀴 림은 프랑스산, 안장은 이탈리아산이고 최종 조립은 대만에서 이루어짐
- 판결** 프레임을 제외한 기타 부품들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었을지라도 해당 부품들이 프레임에 부착되면 개별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전거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프레임의 원산지인 대만임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53522 (2015.02.05)*

- 내용** 중국산 자전거 부품들을 미국산 프레임에 부착하여 자전거 완성
- 판정** 중국산 부품들은 프레임과 결합될 때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로 충분히 변형되었다고 보고, 프레임의 원산지인 미국이 완성된 자전거의 원산지라고 판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2992 (2019.03.27.)*

- 내용** 부품들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되었고, 프레임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대만에서 완성차로 조립됨
- 판정** 프레임이 제작된 중국을 원산지로 판정함

판정 결과

☐ 신청인은 프레임이 자전거의 필수 부품이긴 하나 다른 부품들과 함께 복잡한 조립 공정을 거쳐 새로운 상품인 자전거로 탈바꿈되었으며, 프레임 보다 그 외 부품들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들어 기타 부품 제조 및 최종 조립국인 대만을 원산지로 주장함

관련 법령 및 분석

- ☐ 하지만 CBP는 HQ 735368, HQ H253522, 그리고 NY N302992 사례와 마찬가지로, 프레임은 자전거에 전체적인 형태, 크기, 특성을 부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며, 바퀴, 구동계, 핸들바, 안장 등과 같은 개별 부품은 프레임에 부착되면서 개별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명칭, 성격 및 용도가 변화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대만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부품의 조립 작업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완성된 자전거의 원산지를 자전거 프레임의 원산지인 중국산으로 판정함

결론

- ✓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자전거 프레임의 원산지인 중국임

II 시사점

- CBP는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자전거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프레임이 완성된 자전거의 형태, 크기와 특성을 결정하는 본질적 구성요소라고 판단하며, 기타 부품들은 프레임과 결합되면서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봄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2358 (2020.01.23.), <https://rulings.cbp.gov/ruling/H302358>
- CBP Ruling HQ 735368 (1994.06.30.), <https://rulings.cbp.gov/ruling/735368>
- CBP Ruling HQ H253522 (2015.02.05.), <https://rulings.cbp.gov/ruling/H253522>
- CBP Ruling NY N302992 (2019.03.27.), <https://rulings.cbp.gov/ruling/N302992>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Juice Products Ass'n v. United States(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